

창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단20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및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5. 2.경 피고에게 밀양시 D 지상 목조 기와지붕 황토벽돌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8,000만 원에 도급하고, 피고에게 공사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 지급 공사대금 6,500만 원에서 기성 공사대금 3,014만 원을 공제한 3,48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6,5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6,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원고 및 피고가 2015. 11. 23. 작성한 각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 등은 2015. 5.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8,000만 원(공사대금 7,000만 원 및 자재비 등 1,000만 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5. 5. 4.부터 2015. 10. 6.까지 수차례에 걸쳐 6,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완성되지 아니한 채 중단되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이던 2015. 10. 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5. 11. 15.까지 완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완성 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겠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 이하 '종전 각서'라 한다)를 작성 및 교부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이던 2015. 11. 23. 원고 등에게, '공사대금은 8,000만 원에서 자재비 1,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고 등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은 그대로 인수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하단에 '위 합의인: 원고'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원고도 이 사건 각서 작성 사실은 다투지는 아니한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일 이후인 2015. 11. 26.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시기 및 금액을 고려할 때 이는 이 사건 각서의 합의 내용에 따라 지급된 금원으로 보인다.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4.부터 2015. 10. 6.까지 6,400만 원, 2015. 11. 26. 1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이 된다.
- ④ 이 사건 주택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기둥, 주벽 및 지붕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부분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종전 각서의 작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완성을 앞두고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7,000만 원으로 확정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분을 감안하여 당시까지 지급된 6,400만 원에 더하여 1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합의해지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을 모두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작성된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것이다.
- ⑥ 원고는 종전 각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전 각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 각서에 따른 합의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새로운 합의로써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서는 새로운 수급인 등의 요청에 따라 형식상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부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진명